◉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2-314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우편·교부·정보통신망(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0년도 재평가 관련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전웅희 / (주)세아엘텍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자료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당자	한용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전자우편주소	paul906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2년 8월 1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